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in 부산」 × 「SWITCH K-스타트업 통합관」 「Plug in : Singapore #11」 참가 스타트업 모집공고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대상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Plug in : Singapore #11’ 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모집 및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현지 시장 검증, 파트너쉽 구축, 비즈니스 밋업, 투자 유치 도모
- 동남아시아 해외전시 ‘SWITCH 2026’ K-스타트업 통합관 전시 지원을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 (전시회명) SWITCH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Technology)
-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딥테크 및 혁신 기술 컨퍼런스. 동남아시아 창업 생태계 허브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테크 비즈니스 플랫폼
- (행사일정) '26. 10. 27.(화)~29.(목)/ 싱가포르(마리나 베이 샌즈)
- (주최) 싱가포르 기업청 (Enterprise Singapore)
- (프로그램) 컨퍼런스, 쇼케이스, 라운드테이블,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킹, 피칭대회(슬링샷) 등
- (행사규모) 참관객 25,000명, 전시자 400개사, 연사 300명, 108개 시장분야, 14,000개 기관 참여

□ 진출국가 : 싱가포르

□ 모집대상 :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시 소재 7년 이내 스타트업

※ [붙임 1] 참조

필수사항	사전 프로그램(6월 ~전시기간 전), 10월 중 현지 프로그램에 Full-time 참여 가능한 스타트업(사전교육 및 멘토링은 온라인 병행 진행 예정) *현지 일정 기준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여권 보유 필수
	발표평가 및 현지 파트너 밋업을 위한 영어 가능자
	글로벌(영문) IR 자료 보유기업
	※ 참여자격 및 유의사항은 [붙임 1] 및 유의사항 참조

□ 모집규모 : 1개사 ※ 지원포기 등을 고려한 예비 1개사 추가 선발예정

□ 모집기간 : 2026. 5. 28.(목) ~ 6. 7.(일) 23:59까지

□ 모집방법 : 부산창업포털 페이지를 통한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 지원내용 : 항공료 실비 지원(50만원 한도), K-스타트업 통합관 연계 및 부스 지원

※ 물류·운송, 숙박, 여행자보험 등은 자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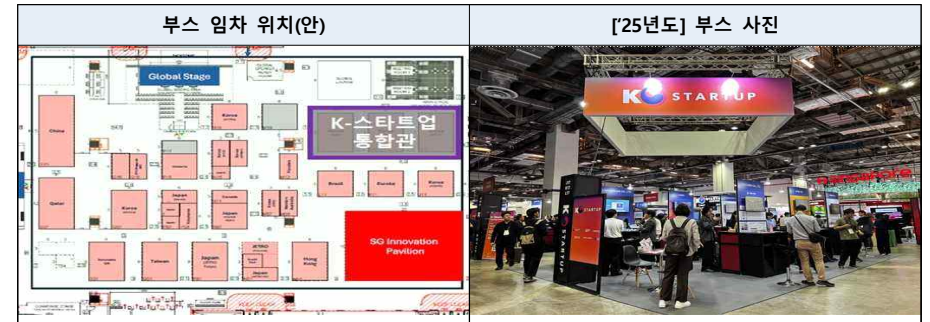
- 전시회 및 피칭대회 사전준비 : 피칭대회(슬링샷) 신청, 사전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 슬링샷은 SWITCH 주최기관 싱가포르기업청(Enterprise Singapore)가 개최하는 스타트업 경진대회로 동남아시아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성과 기술력 검증 대회로 자리매김* 25년 150개국 6,800여개의 스타트업이 슬링샷 신청

** 페스트트랙 선정기업은 Slingshot TOP 250 직행 (선정단계 : 접수 → TOP 250 선정 → TOP 50 선정 → SWITCH 기간 중 피칭 및 최종 3개사 선정)

- 현지 프로그램 : 기업별 전시부스, 투자자·바이어 매칭, 현지 네트워킹 등 종합 지원

※창업진흥원의 K-Startup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일정

① 기업모집 및 선정	→	② 전시회 준비·참여	→	③ 성과 공유
참가기업 모집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전시 참여		성과공유회 및 성과관리 등
2026. 6. 중		현지 2026.10.27.~29.		~ 2026.12.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개요

□ **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에 따른 스타트업 선정

□ **평가절차**

발표평가	선정결과 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2~3분 영어를 포함한 10분 내외 PT 발표 및 5분 내외 질의응답 (온라인 평가)	프로그램 일정 안내, 피칭대회(슬링샷) 참여 지원, 참여기업 필요자료 요청 및 준비사항 점검, 협약체결 등

※ 현지에서 영어 소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어 질의가 진행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① 전시·시장 적합성	- 전시회 핵심 산업분야, 테마와의 부합성 - 전시회 성격(B2B, B2C, B2G) 및 참관객 대상 적합성 - 현지 시장, 바이어 타겟의 명확성	30
② 글로벌 경쟁력	- 핵심 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 우위 - 기술의 완성도 및 검증 실적(특허, 인증, 실증 등) - 제품·서비스의 확장성 및 지속 가능성	30
③ 성과창출 실행역량	- 전시 이후 실제 계약, 투자, 기술검증, 매출 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화 준비 수준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가격, 납기, 유통, 사후관리, 인증 등 구체적 실행계획 보유 여부 - 현지 파트너십, 법인, 지사 등 진출 기반 보유 여부 ※ 영어 소통 능력 포함	35
가점	- 해당 전시회 또는 유사 글로벌 전시회 참가경험(2점) - 전시회를 통한 업무협약, 계약 등 성과 보유 여부(2점) - <u>싱가포르 SWITCH 피칭대회 수상여부(1점)</u>	최대 5

3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

□ **신청기간** : 2026. 5. 28.(목) ~ **6. 7.(일) 23:59까지**

□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 페이지를 통한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 부산창업포털(<https://www.busanstartup.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참가신청서	필수	[별첨1]
2	■ 사업계획서	필수	[별첨2]
3	■ 개인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필수	[별첨3]
4	■ 사업자등록증	필수	-
5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해당시
6	■ 국문 피치덱 자료 (발표평가 사용)	필수	자유양식
7	■ 국/영문 사업소개자료(PPT, 브로셔 등)	선택	보유 시 제출
8	■ 가점사항 증빙서류 - 해당 전시회 또는 유사 글로벌 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 전시회를 통한 업무협약, 계약 등 성과 증빙자료 - 싱가포르 SWITCH 피칭대회 수상 증빙자료	선택	보유 시 제출 (가점사항)

※ 현지 진출 시 영문 피치덱 필수

4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자**

- 스타트업의 자체 보유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아닌 경우 참여가 제한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1. 일반유희주점업 2. 무도유희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 의무사항**

- 신청자는 참가 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을 충분히 검토 후 지원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세부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10년간 지원성과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자는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허위 사실에 따라 선정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본 프로그램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으면 등의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김보경 매니저 (☎ 051-749-8947, ✉ bkim@ccei.kr)

붙임 1 (SWITCH)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자격조건

□ **(자격조건)** 추천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부산소재 창업기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야함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결정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

□ **(전시 분야)** 공통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창업기업 중, SWITCH 2026 전시 분야에 부합하는 아이টে을 보유한 창업기업

< SWITCH 2026 전시분야 >

Advanced Computing and Intelligence (첨단 컴퓨팅 및 지능)	Advanced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Systems (첨단 제조 및 산업 시스템)
Digital Technologies and Security (디지털 기술 및 보안)	Environment, Energy and Sustainability (환경,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Health and Biomedical (헬스 및 바이오 메디컬)	(Blank area)

참고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되지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아님 창 업 창 업아님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창 업아님 창 업 창 업아님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이종창업	-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 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되지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 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되지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 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되지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를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료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기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